

## 2026년도 제6회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충청북도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. 선발개요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임용기간	근무예정부서(근무지역)
송무행정	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(주35시간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법무혁신담당관 (청주)
도시계획	지방시설주사 (일반임기제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균형발전과 (청주)
투자유치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충북경제자유구역청 (청주)

※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### 2. 임용예정분야 주요업무

임용예정분야	주요 업무
송무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정심판 중요사건 심리자료 작성, 현지조사, 재결서 작성 등</li> <li>· 소송 업무 자문 수행(답변서, 준비서면, 입증자료 검토 등)</li> <li>· 도정현안(시책사업 등) 법률 검토 및 행정업무 법률 자문 및 법령해석</li> <li>· 각종 법령·판례 등 법률 검토 및 자문</li> <li>·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수행</li> </ul>
도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역도시계획, 도시기본(관리)계획 기술적 검토·자문</li> <li>· 도시계획(사전자문)위원회 상정안건 검토</li> <li>·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, 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한 검토·자문</li> <li>· 도시계획 관련 기관(부서) 의제·협의</li> <li>·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·조사 및 연구 등</li> </ul>
투자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외 투자유치 유망 기업체 발굴 및 유치</li> <li>· 글로벌 주요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·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</li> <li>· 투자유치 관련 외국어 통·번역</li> <li>·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, 외국인 투자유치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및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 관련 업무 등</li> </ul>

※ 자세한 주요업무, 필요역량, 전문지식 등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

### 3. 응시자격

※ 기준일 : 최종시험예정일[면접시험예정일]

#### 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#### 【 결 격 사 유 】

##### 【 지방공무원법 】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# 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】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 /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○ 거주지 및 성별 : 제한 없음

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

○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12.31. 이전 출생자)

### 나. 자격 및 경력요건

임용예정분야	자격 및 경력요건
송무행정	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
도시계획	<p>◆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※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출자출연기관(국가·지자체), 공공기관, 연구소 등에서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</p>
투자유치	<p>◆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8급 또는 8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※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출자출연기관, 공공기관, 민법, 상법,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투자유치 관련 기획·전략수립, 국내외 투자유치, 외국인 투자유치, 투자협약, 투자상담, 유치대상 기업발굴, 기업네트워크 구축, 기업지원, 기업 사후관리 등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※ 우대사항 : 영어 능통자, 토익 800점 이상,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, 토플 iBT 80점 이상 인 자</p>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※ '공공기관'은 2026년 공공기관 지정현황(기획재정부 고시)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

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반영됨.

## 4.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임용령,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,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,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

## 5. 시험 방법

### 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평정성적(총점)이 우수한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선발(동점자 초과합격)

※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 (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)

1. 자기소개서
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등

### 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(평정요소)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 -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, 평정요소별 상, 중, 하로 평가하여 상, 중, 하의 개수를 집계함.
-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의 '상'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

## 6. 시험 일정

- 원서접수 : 2026. 5. 12.(화) ~ 5. 14.(목)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: 2026. 5. 21.(목) ~ 5. 22.(금)
- 면접시험일 : 2026. 5. 29.(금) ~ 6. 1.(월)  
※면접 일시,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
- 최종합격자 발표일 : 2026. 6. 4.(목) 전후  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(<http://www.chungbuk.go.kr/sihum/index.do>)에 게재  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
※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같음함(추가로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)

## 7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### 가.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5. 12.(화) ~ 5. 14.(목) 09:00 ~ 18:00
- 접수처 : 충청북도청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신관7층)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
  - 등기우편 접수 :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 구입) 동봉하여 발송
    - ※ 우편통상환 구입은 **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**
    - ▶ 주소: (28515)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신관7층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응시원서 재중)
    - ▶ 우편으로 원서를 발송한 응시자는 마감 기한 내에 전화(043-220-4733, 4734, 4736)로 우편접수 예정임을 고지
    - ▶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**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하며**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
    - ▶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  - 방문접수 : 근무시간(09:00~18:00) 중 위 접수처로 방문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    - ▶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**‘충청북도 수입증지’** 구입·부착 후 제출 (‘정부 수입인지’ 사용 불가)

#### ◆ 응시수수료

- 송무행정 : 1만원
- 도시계획, 투자유치 : 7천원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

## 나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응시자격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서류전형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사본은 시험실 시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원서접수기간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
-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.

**다.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**

(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)

구 분	내 용
1.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1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<b>*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</b></li> <li>- (방문접수) 농협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수입증지 구입·부착 후 제출</li> <li>- (우편접수)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편통상환 구입·동봉 후 발송</li> <li>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</li> </ul>
2.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작성요령 반드시 참고</b></li> <li>- 응시자격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</li> <li>-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(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)</li> </ul>
3.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A4 3매 이내로 작성</li> <li>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</li> </ul>
4.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A4 3매 이내로 작성</li> </ul>
5.동의서 각 1부 (별지서식 제5호) : 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필 서명 필수</li> <li>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</li> <li>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</li> <li>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</li> </ul>

구 분	내 용
<p>6. 자격증·면허증 사본 : 해당자 필수</p>	<p>&lt;&lt; 송무행정 분야 응시자 필수 &gt;&gt; ○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·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·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
<p>7. 경력증명서 1부 (별지서식 제6호-필요시) : 해당자 필수</p>	<p>&lt;&lt; 도시계획, 투자유치 분야 응시자 필수 &gt;&gt; ○ <u>근무기간, 주근무시간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,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</u> - 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- 발행기관(회사)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및 증명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거나, 별지서식(제6호)을 사용하여 제출 - 경력기간(근무기간)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. ※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40시간)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[예시]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: 4년×(20시간/40시간) = 2년 인정 ○ <u>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아래의 자료 등 보완서류를 제출</u> -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등) - 폐업회사인 경우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' (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) - 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</p>
<p>8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: 필요시제출</p>	<p>○ 학위별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○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도 (전문)학사 포함 <u>각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</u> ○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</p>
<p>9.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: 필수서류</p>	<p>○ <u>응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필수 제출을 요함</u> ※ 경력 검증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※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만으로는 경력인정 불가 ○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○ 국민건강보험공단(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http://www.nhis.or.kr</a>)에서 발급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</p>
<p>※ 주의사항</p>	<p>○ 필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. ○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</p>

## 8. 임용예정일, 임용기간,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

- 임용 예정일 : 2026년 6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임용기간 : 선발개요 참고(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)
- 보수 :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(주35시간)	-	60,956천원
지방시설주사 (일반임기제)	86,606천원	57,708천원
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70,782천원	50,272천원

### 비고

1. 연봉은 상·하한액의 범위에서 책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자의 자격, 능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.
2. 임용약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한액의 120%를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
3.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
4.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

## 9. 기타 참고사항

- 시험 전형 결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,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,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외국인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,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분야	담당부서	연락처	비고
시험절차 등	인사혁신과	043-220-4733	
송무행정	법무혁신담당관	043-220-2335	
도시계획	균형발전과	043-220-4132	
투자유치	충북경제자유구역청	043-220-8312	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  
 2.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(제1호~제6호) 각 1부.  
 3. 공공기관 지정 현황 1부.